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5

보도자료 2023. 7. 25.(화)

자료문의 : 반부패1과장
전화번호 : 02-3480-4274
주책임자 : 반부패1과장 윤병준

제 목

김치프리미엄 악용,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출 사건 수사결과

-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원을 국외유출하고, 투기세력과 함께 2,500억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유출 사범 등 총 49명 기소 (29명 구속)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최근 2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풍으로,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소위 ‘김치 프리미엄’ 현상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에 대해, 22년 8월부터 관세청, 금감원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
- 그 결과,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,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후, 매각대금 13조 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송금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총 49명을 기소(29명 구속)하고,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(지명수배)하였음
- 약 2년 동안 비트코인 기준 ‘김치 프리미엄’의 평균치는 약 3~5%(최고점 기준 20% 상회) 상당이었는데,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은 전체 송금액 13조 원 기준으로 최소 3,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,
 - 본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,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 등을 담당할 대가로 그중 28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음
- 이와 함께, 불법 외화유출을 방지·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오히려

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현금, 고가 명품,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, 금융회사 직원 7명을 기소(2명 구속)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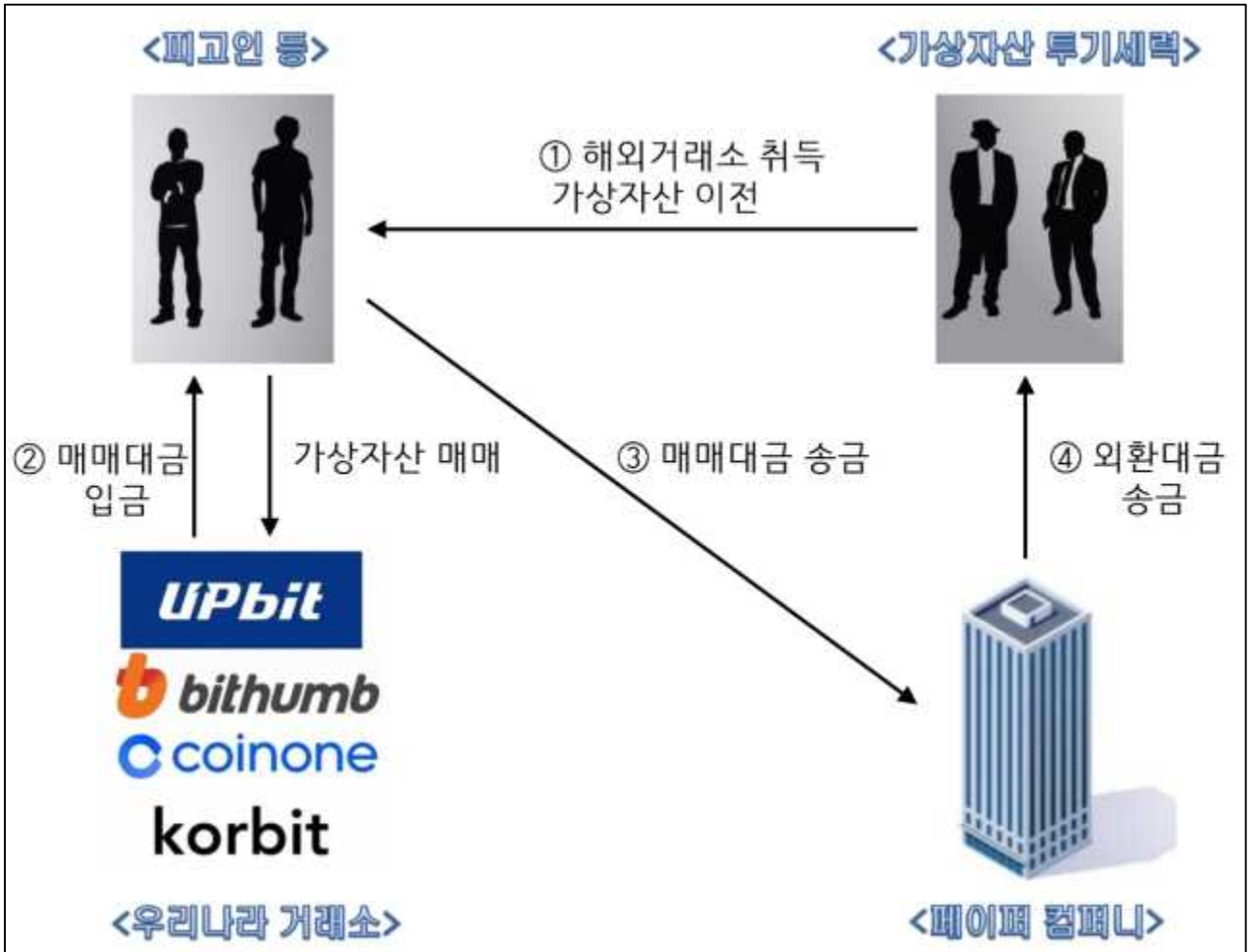
- 기소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금 등 대가를 받고, 거액의 불법 외화유출 범행을 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
- 나아가,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·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2개의 금융회사(시중은행 ㉠ 및 선물사 ㉡)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, 기소하였음
 - ㉠은행 지점장은 4,186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유출하였는데, ㉠은행은 해당 지점의 외환거래 실적이 이례적으로 폭증함에도 이를 점검하는 등 관리·감독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,
 - ㉡선물사 직원들은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7조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였는데, ㉡선물사의 관리·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로 ㉡선물사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법 외화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
- 앞으로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하여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,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, 불법 외화유출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,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금융회사들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관리·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임

1

김치프리미엄 이용 외화유출 사건 개관

- 『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입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 → ②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 → ③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 → ④ 허위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 송금하여 김치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재집금』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는 범행임

- 김치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①, ②, ③, ④ 행위를 반복하였는바,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금이 100번 순환하게 되면 해외송금 규모는 1조 원이 되는 구조임



2 13조 원 상당 불법 외환유출 사범 49명 기소 (29명 구속)

1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대표 수사 사례 [합계 4.3조원 불법 외환유출]
 - (피고인) 가○○, 나○○, 다○○, 라○○ 등 16명
 - (공소사실 요지) '21. 4.~'22. 5.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2.2조 원 해외송금 [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] 등
- ※ 자세한 내용은 [별첨1-1] '중앙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' 참조

● 대구지방검찰청 대표 수사 사례 [합계 8.7조 원 불법 외환유출]

- (피고인) 조○○, 초○○, 코○○, 토○○

- (공소사실 요지) '21. 6.~'22. 7.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무역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9,600억 원 해외송금 [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]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[별첨1-2] '대구지검 수사 외환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' 참조

●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사례 [합계 132억 원 불법 외환유출]

- (피고인) 부○○, 수○○, 우○○, 주○○ 등 7명

- (공소사실 요지) '21. 12.~'22. 3.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무역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132억 원 해외송금 [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]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[별첨1-3] '인천지검 수사 외환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' 참조

2. 약 3,900억 원 규모의 이익 및 281억 원 범죄수익 확인

-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이 약 3~5%('21. 4.~5.경에는 20% 상회)로 산정되는바, 외화 불법유출 사범과 투기자금 제공자들은 최소 3,900억 원 상당의 이익(전체 송금액 13조원 기준)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됨

< 실시간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변동 차트 ('20. 1.~'22. 9.), 출처 : cryprice.com >



- 한편, 본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,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 송금 등을 담당한 대가로 그중 28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, 그 범죄수익 281억 원에 대해서는 몰수·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임
- 본건 범행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은 가상자산인 반면, 외화 13조 원이 고스란히 해외 유출되었고, 유출된 외화는 모두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된 것인바, 국내 실물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3 불법 외화유출을 도운 금융회사 직원 7명 기소 (2명 구속)

1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㉠시중은행 사례
 - (피고인) 푸○○[52세, ㉠은행 前 지점장]
 - (공소사실 요지) ① '22. 5.~6.경 허위서류를 이용해 16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 [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], ② 외화 유출 사범과 공모, '21. 10.~'22. 6.경 허위서류를 이용해 4,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[외국환거래법위반], ③ 위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2,500만 원 상당 수수 [특경법위반(수재등)] ④ '22. 5.경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누설[은행법위반] 등
- ㉡증권사 사례
 - (피고인) 후○○(42세, ㉡증권사 팀장) 등
 - (공소사실 요지) ① 외화유출 사범과 공모, '19. 8.~'22. 8. 허위서류를 이용해 5조 7,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 [업무방해], ② 위 외화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명품 시계(약 3,000만 원), 명품 가방(약 1,300만 원) 등 합계 58,351,000원 상당 이익 수수 [특경법위반(수재등)]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[별첨2] '대구지검 수사 금융회사 직원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' 참조

2. 외환 송금 시스템상 문제점 확인

- 불법 외환유출 사범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1일 최대 800억 원의 해외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 하였음에도, 이를 감시·감독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



- 특히 이러한 금융시스템 부재와 미작동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불법 외환유출 사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고,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

4 감시·감독 소홀 금융회사 2개 법인 양벌규정 적용, 기소

1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㉠시중은행

- 공소사실의 요지 : ㉠은행 소속 지점장이 ㉠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① '22. 5.~6.경 허위서류를 이용해 16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도록 하여

미신고 자본거래 방조, ② 외환유출 사범과 공모, '21. 10.~'22. 6.경 허위 서류를 이용해 4,02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[외국환거래법위반]

● ㉠증권사

- 공소사실의 요지 : ㉠증권사 소속 직원이 ㉠증권사의 업무에 관하여, 법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① '19. 8.~'22. 8. 투자전용 외화계정에 입금된 USD 10억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1조 2,000억 원을 비거주자에게 송금하고, ② '19. 8.~ '22. 8. 비거주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5조 8,000억 원을 송금받음 [외국환거래법위반]

2. 실적위주 관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 절차 방치

- 은행은 외환 영업 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일부 영업점이 외환송금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송금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, 피고인들의 계속된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됨

※ 은행은 외환 송금 영업으로 전신료, 송금수수료, 매매익(FX마진) 등의 수익 취득

- 실제 불법 외화유출 범행에 가담한 지점장이 소속된 ㉠은행 지점의 해외 송금 실적은 이 사건 불법 외화유출 범행이 시작되고 1년 사이 무려 300배가 넘게 폭증하였음에도, ㉠은행은 위와 같이 실적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하여 은행장 포상을 함

<甲은행 지점의 외화송금 실적 추이>

19년 상반기	19년 하반기	20년 상반기	20년 하반기	21년 상반기	21년 하반기
1,883,515	1,804,573	1,978,458	1,362,613	11,773,317	409,018,304

- 한편 ㉠증권사는 직원들에게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아 직원들이 자신에게 확인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됨

- 이로써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이 과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7조 원 상당의 가상자산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거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

4 향후 계획

- 수사 초기부터 금감원, 관세청 등과 자료,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 수사에 준하는 협업으로 신속하게 사안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
-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관련 외환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관서와 외국환은행들의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함
-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외환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고,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임 ■■■

[별첨1-1] 중앙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가○○ (甲·乙조직)	<甲조직> 중간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7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3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51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1. 14.)
		<乙조직> 총괄 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8.)
2	나○○ (甲·丙조직)	<甲조직> 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1. 14.)
		<丙조직> 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5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3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5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2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2.)
3	다○○ (甲조직)	무역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0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4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하고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10. ~ '22. 3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32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1. 14.)
4	라○○ (甲조직)	무역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0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3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10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2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1. 14.)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5	마○○ (甲조직)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7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94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1. 30.)
6	바○○ (甲·丙조직)	<甲조직> 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5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10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2. 9.)
		<丙조직> 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5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3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5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2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2.)
7	사○○ (甲·乙조직)	<甲조직> 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7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3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51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2. 9.)
		<乙조직> 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5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
8	아○○ (甲조직)	은행 브로커	'22. 3. ~ '22. 5. 페이퍼컴퍼니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함께 2,110만 원 수수 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알선수재)】	구속기소 (22. 12. 9.)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9	자○○ (丙조직)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94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83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2. 19.)
10	차○○ (丙조직)	총괄 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3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94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83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2. 19.)
11	카○○ (甲조직)	무역업체 실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0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4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10. ~ '22. 3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32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2. 12. 22.)
12	타○○ (甲조직)	무역업체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1. 10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38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1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8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8.)
13	파○○ (甲조직)	실무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0. ~ '21. 11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1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10. ~ '21. 11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4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8.)
14	하○○ (甲조직)	총괄 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2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2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23. 1. 18.)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15	거○○ (甲조직)	실무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2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2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1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16	너○○ (甲조직)	은행 브로커	'22. 4. 페이퍼컴퍼니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 수수 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알선수재)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17	더○○ (乙조직)	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1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0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18	러○○ (乙조직)	실무 담당자	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1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19	머○○ (丁조직)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5. ~ '22. 5. 허위 중계무역대금 약 1.1조원을 해외송금하여 (i) 제3자 지급 신고 의무 위반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익금을 취득하여 약 0.78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20	버○○ (丁조직)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78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불구속기소 (‘23. 1. 18.)
21	서○○ (甲조직, 피의자)	해외 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7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.94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기소중지 (지명수배) (‘23. 7. 20.)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22	어○○ (甲·丙조직)	<甲조직> 실무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4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1. 9. ~ '22. 5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1.66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		<丙조직> 실무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5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3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5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29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
23	저○○ (乙조직)	실무 담당자	'21. 5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19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24	처○○ (乙조직)	실무 담당자	'21. 5. ~ '22. 5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19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25	커○○ (丙조직)	실무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2. ~ '22. 8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43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'22. 2. ~ '22. 8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약 0.4조원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26	터○○ (丙조직)	무역업체 대표	'21. 12. ~ '22. 7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0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27	퍼○○ (丙조직)	무역업체 대표	'21. 12. ~ '22. 7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05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28	허○○ (丙조직)	무역업체 대표	'22. 1. ~ '22. 4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0.02조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업무방해】	약식기소 (23. 7. 20.)

[별첨1-2] 대구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	범죄사실 요지	처분		
1	일본 관련 범행	고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9.~'22. 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3,398억원 가상자산 매매 '21. 4.~'22. 6.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방해 '21. 4.~'22. 6. 범죄수익 약 47억원 은닉 '21. 5.~'22. 6. 타인 실명으로 4,040회 금융거래 '21. 4.~'22. 6. 신고 없이 약 4,957억원 외환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외국환거래법위반】	구속기소 (‘22. 8. 10.)		
2		노○○		구속기소 (‘22. 8. 10.)		
3		도○○		구속기소 (‘22. 8. 10.)		
4		로○○		불구속기소 (‘22. 8. 10.)		
5		모○○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9.~'22. 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1,812억원 가상자산 매매 '21. 7.~'22. 6.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방해 '21. 7.~'22. 6. 타인 실명으로 3,487회 금융거래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금융실명법위반】	구속기소 (‘23. 7. 4.)	
6		보○○		고○○, 로○○과의 공범	기소중지 (범죄인 인도청구 등)	
7		외국인 투자자 관련 범행		소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9.~'22. 8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2조 8,698억원 가상 자산 거래 '19. 8.~'22. 8. 파생상품거래인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위계로써 420회 5조 7,845억여 원 상당 외화 송금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'19. 8.~'22. 8. 신고 없이 831회 7조여 원 상당 외환 입.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'20. 3.~'22. 8. 타인 실명으로 18,967회 금융거래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외국환거래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】	기소중지 (범죄인 인도청구 등)
8				오○○		

순번	피고인		범죄사실 요지	처분
9		조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9.~'22. 7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5,400억원 가상자산 매매 ● '21. 6.~'22. 7.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방해 ● '22. 1.~'22. 2. 범죄수익 약 45억원 은닉 ● '21. 6.~'22. 2. 타인 실명으로 6,488회 금융거래 ● '21. 6.~'22. 7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9,600억원 외환 송금 하여 외국환업무 영업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외국환거래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'23. 1. 11. 징역 4년 선고)
10	중국 관련 범행	초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10.~'22. 2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544억원 가상자산 매매 ● '22. 1.~'22. 2. 범죄수익 약 1.8억원 은닉 ● '21. 10.~'22. 2. 타인 실명으로 1,288회 금융거래 ● '21. 10.~'22. 2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1,783억원 외환 송금 하여 외국환업무 영업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외국환거래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'23. 1. 11. 징역 3년 선고)
11	중국 관련 범행	코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2. 2.~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1,000억원 가상자산 매매 ● '22. 3.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● '22. 3.~6. 범죄수익 약 155억원 은닉 ● '22. 4.~6. 타인 실명으로 1,166회 금융거래 ● '22. 3.~6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1,767억원 외환 송금하여 외국환업무 영업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외국환거래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'23. 1. 11.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)
12		토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2. 4.~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407억원 가상자산 매매 ● '22. 4.~6. 범죄수익 약 56억원 은닉 ● '22. 4.~6. 타인 실명으로 122회 금융거래 ● '22. 4.~6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478억원 외환 송금하여 외국환업무 영업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외국환거래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'23. 1. 11.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)

순번	피고인		범죄사실 요지	처분	
13	상장사 횡령 관련 범행	포○○	보○○와 공모하여, ● '18. 4.~'20. 2. 코스닥 상장사 법인자금 합계 약 152억 원 횡령 [특정경제범죄(횡령)] ● '21. 9.~'22. 6. 상장사의 일본법인 직원을 통해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1,812억원 가상자산 매매 [특정금융정보법위반] 【특정경제범죄(횡령), 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	구속기소 (23. 5. 10.)	
14		호○○		구속기소 (23. 5. 10.)	
15		구○○		구속기소 (23. 5. 10.)	
16	면세점 송객 수수료 관련 범행	누○○	● '21. 4.~'22. 6. 총 113회에 걸쳐 은행 직원들을 속여 6개 유령업체의 명의로 원화 합계 1,986억 원 상당의 미국달러를 외화 송금 【업무방해】	구속기소 (23. 6. 7.)	
17		두○○		● '21. 9.~'22. 10.경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없이 영업으로 합계 3,33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 ● '21. 6.~'21. 12.경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총 708회에 걸쳐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 ● '21. 4.~'22. 6. 총 113회에 걸쳐 은행 직원들을 속여 6개 유령업체의 명의로 원화 합계 1,986억 원 상당의 미국달러를 외화 송금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금융실명법위반, 업무방해】	구속기소 (22. 12. 23.)
18		루○○			구속기소 (22. 12. 23.)
19		무○○		구속기소 (22. 12. 23.)	

[별첨1-3] 인천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부○○ ※ 리비아 국적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11. ~ '22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약 9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(i)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, (i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 ● '21. 12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32억 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● '22. 1. ~ '22. 10.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86억 원 상당을 해외송금, 104억 원 상당을 현금 인출하여 범죄수익은닉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외국환거래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23. 1. 19.)
2	수○○	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11. ~ '22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약 9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영위 ● '21. 12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32억 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● '22. 1. ~ '22. 10.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86억 원 상당을 해외송금, 104억 원 상당을 현금 인출하여 범죄수익은닉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외국환거래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23. 1. 19.)
3	우○○	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11. ~ '22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약 9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영위 ● '21. 12. ~ '22. 3. 허위 무역대금으로 약 132억 원 송금 대행하여 (i) 무등록외국환업 영위, (ii)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업무 방해 ● '22. 1. ~ '22. 10.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86억 원 상당을 해외송금, 104억 원 상당을 현금 인출하여 범죄수익은닉 <p>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, 업무방해, 외국환거래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</p>	구속기소 (23. 2. 2.)

순번	피고인	지위	범죄사실 요지	처분
4	주○○	중간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1. ~ '22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약 6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영위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 	불구속기소 (‘23. 2. 2.)
5	추○○	명의 대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1. 부○○과 우○○에게 은행 계좌가 설치된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교부 【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전기통신사업법위반】 	불구속기소 (‘23. 2. 2.)
6	쿠○○	명의 대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1. 부○○과 우○○에게 은행 계좌가 설치된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교부 【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전기통신사업법위반】 	구속기소 (‘23. 2. 2.)
7	투○○ ※ 리비아 국적	전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11. ~ '22. 10.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약 9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 영위 【특정금융정보법위반】 	기소중지 (지명수배) (‘23. 5. 31.)

[별첨2] 대구지검 수사 금융회사 직원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㉠ 시중 은행	푸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2. 5.~6. 허위서류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6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, '21. 10.~'22. 6.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 4,02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●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 ● 위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금 등 2,500만원 상당 수수 ● '22. 5.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해당 은행에 접수되자 이를 공범에게 누설 <p>【외국환거래법위반, 위계공무집행방해,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, 은행법위반 등】</p>	구속기소 (징역 3년 확정)
2	㉡ 증권사	외환 거래 범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외투자자와 공모하여, '19. 8.~'22. 8.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420회 5조 7,845억원 상당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은행 직원의 외화 송금 업무를 위계로 방해 ● '19. 8.~'22. 8. 해외투자자 등이 신고 없이 411회 1조 2,075억원 상당 외환을 입금하도록 도와주어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함 <p>【업무방해,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】</p>	후○○ 구속기소 ('23. 2. 27.) 그○○ 불구속기소 ('23. 3. 20.)
3		후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0. 9.~'22. 1. 해외투자자로부터 명품 시계(30,970,000원), 명품 가방(13,140,000원), 그림 구매대행 수고비(1,000만원), 고가 와인(4,241,000원) 접대 등 합계 58,351,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<p>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】</p>	구속기소 ('23. 2. 27.)
4		그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0. 12.~'21. 4. 해외투자자로부터 명품 가방(24,350,000원), 고가 와인(3,729,000원) 접대 등 합계 28,079,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<p>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】</p>	불구속기소 ('23. 3. 20.)
5		느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5. 해외투자자로부터 명품 가방(12,690,000원) 수수 <p>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】</p>	불구속기소 ('23. 3. 20.)
6		드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4. 해외투자자로부터 명품 지갑(1,210,000원), 고가 와인(2,748,000원) 접대 등 합계 3,958,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<p>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】</p>	불구속기소 ('23. 3. 20.)
7		르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0. 9.~'21. 4. 해외투자자로부터 명품 가방(4,360,000원), 스카프(620,000원), 고가 와인(4,241,000원) 접대 등 합계 9,221,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<p>【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】</p>	불구속기소 ('23. 3. 20.)

순 번	피고인		범죄사실 요지	처분
8	㉔ 시중 은행	므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1. 6.~'22. 7. 허위 서류를 이용해 267회 2,22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고,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 ● 위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5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대금, 특급호텔 숙박비 등 합계 1,703,550원 상당의 이익 수수 【위계공무집행방해,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수재등) 등】	불구속기소 ('23. 7. 25.)